

대법원 2012. 12. 28 선고 2012다89450, 2012다89467(반소) 판결 [채무부존재확인,
부당이득금반환(반소)
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2. 12. 28 선고 2012다89450, 2012다89467(반소)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8. 16 선고 2011나150099, 2011나15105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피상속인

박△순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▼욱

전▽영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

담당변호사 이♡복, 박◆호, 소▼호, 오×연

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8.16.선고 2011나150099(본소), 2011나15105(반소)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2.12.28.

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